#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4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4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총회의 결의사항 등) ①	제24조(총회의 결의사항 등) ① -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	
결의를 거쳐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· <u>대차</u>	4 <u>재무</u>
<u>대조표</u> ·손익계산서 및 잉여금	<u>상태표</u>
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	
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승인	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